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2. 9.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0호로 2022년 9월 18일 김지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적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 정원, 채용, 공무원 전환 심의위원회 등

라. 출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4조)

- 전보, 후생복지, 근로조건의 보장, 휴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아.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관리 규정」 등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2.09.14.~09.19./5일 간)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적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는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환경조성 등 구청장과 공무원 소속 부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는 단체협약이나 다른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정원)는 공무원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적정 관리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채용)**는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공무원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상시적·지속적 신규 업무 발생 시 공무원 채용에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안 제7조(공무원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 전환 채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함.
- **안 제8조(출장)**는 부서장이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 지급을 규정함.
- **안 제9조(실비보상)**는 공무원 보수 외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실질적 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전보)**는 예산 감소, 담당 직무 소멸,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직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후생복지)**는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후생 복지제도 시행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준용을 규정함.
- **안 제12조(근로조건에의 보장)**는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할 것을 규정함.
- **안 제13조(휴직)**는 공무원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4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관해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음을 규정함.
- **안 제15조(표창)**는 직무에 성실하고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6조(손해배상)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함.

## ○ 검토 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권익보호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발의된 안건임.
-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구의회가 공무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에 개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 규정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보수는 단체협약에 따르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례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명칭(조례)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해당될 것으로 해석하고(노사관계법 제과-1200, 2008.11.25.), 같은 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에서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타당한 조례안으로 보이며, 조례안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조** 가. 공무원의 정수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관리 규정」 제7조제2항)

## 1. 250일이상 고용상근인력의 정수

| 부서별         | 계   | 단 순 노 무 원 |                 |               |                 |           | 도 로 보수원 | 환 경 미화원 | 의료 급여 관리자 |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방문 간호사 | 통합 사례 관리자 | 아동 통합 사례 관리자 | 지역 사회 복지사 | 청사 청소원 | 직업 상담사 |
|-------------|-----|-----------|-----------------|---------------|-----------------|-----------|---------|---------|-----------|------------------|---------------|--------|-----------|--------------|-----------|--------|--------|
|             |     | 소계        | 시 설 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 현장공사·작업등 현장인부 |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 단순잡역 조무인부 |         |         |           |                  |               |        |           |              |           |        |        |
| 총 계         | 223 | 13        | 6               | 7             |                 |           | 7       | 150     | 3         | 2                | 4             | 22     | 5         | 1            | 1         | 12     | 3      |
| 청소과         | 150 |           |                 |               |                 |           |         | 150     |           |                  |               |        |           |              |           |        |        |
| 푸 른 도시과     | 1   | 1         | 1               |               |                 |           |         |         |           |                  |               |        |           |              |           |        |        |
| 도로과         | 9   |           |                 |               |                 |           | 7       |         |           | 2                |               |        |           |              |           |        |        |
| 치수과         | 7   | 7         |                 | 7             |                 |           |         |         |           |                  |               |        |           |              |           |        |        |
| 사 회 복지과     | 3   |           |                 |               |                 |           |         |         | 3         |                  |               |        |           |              |           |        |        |
| 자 치 행정과     | 4   | 4         | 4               |               |                 |           |         |         |           |                  |               |        |           |              |           |        |        |
| 보 육 지원과     | 5   | 1         | 1               |               |                 |           |         |         |           |                  | 4             |        |           |              |           |        |        |
| 아 동 청소년 복지과 | 2   |           |                 |               |                 |           |         |         |           |                  |               |        |           | 1            | 1         |        |        |
| 건 강 증진과     | 22  |           |                 |               |                 |           |         |         |           |                  |               | 22     |           |              |           |        |        |
| 복 지 정책과     | 5   |           |                 |               |                 |           |         |         |           |                  |               |        | 5         |              |           |        |        |
| 총무과         | 12  |           |                 |               |                 |           |         |         |           |                  |               |        |           |              |           | 12     |        |
| 일자리 경제과     | 3   |           |                 |               |                 |           |         |         |           |                  |               |        |           |              |           |        | 3      |

## 2. 청원경찰의 수

| 부 서 별 |       | 합계 | 경 비 청원경찰 | 비고 |
|-------|-------|----|----------|----|
| 총 계   |       | 4  | 4        |    |
| 본청    | 소 계   | 4  | 4        |    |
|       | 총 무 과 | 4  | 4        |    |

|    |                                        |
|----|----------------------------------------|
| 참조 | 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관리 규정」 주요내용 비교 |
|----|----------------------------------------|

| 구 분              |             | 조례안                     | 공무원 관리규정                                              |
|------------------|-------------|-------------------------|-------------------------------------------------------|
| 공무원 등 정의         |             | ▶제2조                    | ▶제2조, 제3조                                             |
| 구청장의 책무          |             | ▶제3조                    | -                                                     |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 ▶제4조                    | -                                                     |
| 인사<br>관<br>련     | 정원          | ▶제5조<br>-부서별, 직종별 적정 관리 | ▶제2장 정수의 책정 및 관리<br>(제5조~제8조)<br>-정수채정요구 및 승인, 총수, 관리 |
|                  | 채용          | ▶제6조(채용)<br>-공개경쟁채용 원칙  | ▶제9조(채용)<br>-채용방법 및 절차(채용공고, 신원<br>조회 등)              |
|                  | 인사관리<br>위원회 | ▶제7조(공무원 전환 심의위원회)      | ▶제22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                  | 정년          | -                       | ▶제12조(근무상한연령)<br>▶제13조(채용해지)                          |
| 출장               |             | ▶제8조(출장)                | -                                                     |
| 보수               |             | ▶제9조(실비보상)              | -                                                     |
| 전보               |             | ▶제10조(전보)               | -                                                     |
| 권<br>익<br>보<br>장 | 후생복지        | ▶제11조(후생복지)             | -                                                     |
|                  | 근로조건의 보장    | ▶제12조(근로조건의 보장)         |                                                       |
|                  | 휴직          | ▶제13조(휴직)               |                                                       |
|                  | 차별적 처우금지    | ▶제15조(차별적 처우금지)         |                                                       |
| 표창 및 징계          |             | ▶제14조(표창)               | ▶제4장 청렴의무 및 징계<br>(제17조~제28조)<br>-청렴의무, 징계사유, 징계의결 등  |
| 손해배상             |             | ▶제16조(손해배상)             |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 -                       | ▶제5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br>(제29조~제31조)                      |

# 참 고 자 료

## 1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